
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15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2.

발 의 자 : 강대식 · 이인선 · 김 건
박덕흠 · 유용원 · 이양수
고동진 · 김상훈 · 백종현
김선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고,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,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, 듣지 못하는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병무청장 등의 기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자격관

리 및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.
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 제목 중 “결격사유”를 “결격사유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, 대상기관 및 제공 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8조제3호 중 “제27조제2호부터”를 “제27조제1항제2호부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<u>결격사유</u>) (생 략)	제27조(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<u>결격사유</u>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, 대상기관 및 제공 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28조(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·정지)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	제28조(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·정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 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2호,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를 취소하여야 한다. 1. 2. (생략) 3. <u>제27조제2호부터</u> 제4호까지 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경우 4. ~ 9.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제27조제1항제2호부터</u>----- ----- ----- 4. ~ 9. (현행과 같음)
--	---